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Q** 장제비를 사업주와 유족이 분담하였을 경우의 장의비 수급권자는 누구인지요?

**A** 회사측에서는 사업장 내 사고로 인하여 유족 측의 요구 없는 상황에서 망인 장제 관련 식대 등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사후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장제비 지급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회사측에서 장제비 일체를 부담한 것도 아니고 유족과 회사간에 합의가 결렬된 후 가족들에 의하여 장제식이 치러졌으므로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보조금의 성격으로 판단하여 장제비 지급을 유족으로 결정,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불함이 타당하다.

☞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582-3)

**Q** 환경미화원이 새벽 청소 후 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지정청소지역으로 이동 중 사고시 산재승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위 사고는 환경미화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청소감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청소 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고, 통상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에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다시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정청소구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재해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5조의2(휴게시간중 사고)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시간 중 재해인정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는 바, 동 재해는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에 지정한 식당이 없고 통상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하에 맡겨져 왔고 거의 모든 환경미화원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실정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증거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단순한 증거가 아니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위임부담과 함께 이익을 취하는 분양 대행행위는 일종의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 대행행위는 증거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임부담과 함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서 이른바 분양대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분양대행은 증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료가 금지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참고).

따라서 귀하가 한 상가분양 업무는 이른바 분양대행 업무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증거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록 부동산중개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증거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2846)

**Q** 저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같이 신축중인 상가의 분양을 의뢰 받으면서 ① 분양대금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분양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제가 가지기로 하고, ② 분양에 따른 비용은 전액 제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③ 저의 책임 아래 상가를 분양하되 미분양상가는 제가 인수하고, ④ 총분양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제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저는 경비를 들여 광고를 하는 등으로 상가 점포 중 30개를 분양하고 갑으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과 사이가 나빠지자 같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청에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과연 부동산중개업

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는 취지입니다.

귀하가 한 상가분양 대행행위도 일응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행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병원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좋다. 우선 몸을 움직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심장이 빨라지게 되면 자연히 혈액순환이 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이 안 되는 것은 단순히 혈액의 흐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혈관 내에 흐르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돗물이 힘있게 팔팔 쏟아지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모세 혈관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도맡게 하는 힘이 있어야 맥이 있다. 의욕적이다. 활동적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기가 부족할 때 한방 약으로는 '십전대보탕'을 복용하면 좋다. 인삼이 주 처방 재료로 기를 튼 구어 주고 조혈작용(造血作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위장이 약하고 식욕이 떨어질 때 '사군자탕', '육군자탕', '보중익기탕' 등의 군자탕류의 약을 쓴다.

☞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ijhbang.co.kr

맥이 없을 때 ②

정상 맥박은 1분에 72-75번 뛰는데, 기허(氣虛)맥은 50-65번 정도로 느리게 뛰게 된다. 이렇게 흐름이 둔탁해져서 지장을 받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체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영양분의 보급속도도 떨어지게 되어 아물러 노폐물 등 대사산물의 배출이 느려지게 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가시지 않고 자꾸 드러눕고 싶고 손발이 저리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혈액순환 부조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음에도 의례 그러려니 하고 방치해 둔다면 자연히 조직과 기관에 이상이 생겨 장부에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무릇 기운이 충분한 곳에서 저항력 과 면역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운이 없어 저항력이 약해지면 이차적 감염으로 감기와 염증성 질환에 잘 걸리게 된다. 마땅히 기를 끌어 올려 주어 정상적인 맥박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맥이 없는 경우에는 혈액 흐름의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방법이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을 키우고 성 에너지가 승화 되도록 지도한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한다.

딸의 성교육은 ▶성기에 대한 교육은 생명의 탄생과 관련지어 설명해야 한다 ▶산도와 요도(소변이 나오는 길)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 시켜야 한다 ▶생명의 귀중함과 존엄성을 일깨워야 한다 ▶올바른 성 용어를 사용한다 ▶10세를 전후하여 초경에 대비한 사전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 ▶생리대의 준비 및 사용방법, 보관방법, 뒤처리 방법 등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초경 때부터 월경에 대한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자기의 주기변화와 몸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월경지도는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모성의 사회적 기능과 함께 이해시켜야 한다 ▶평등한 성의 입장에서 지도해야 한다.

☞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자녀의 성교육

이들의 성교육은 ▶음경의 구조와 함께 포경수술에 관해서 설명한다 ▶포경수술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포피가 길어서 발기가 된 후에도 음경을 덮게 되는 경우 포경수술은 꼭 하여야한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사마타마 키가

다르듯이 성기의 크기도 다르다. 성기의 크기와 모양은 성적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 없다 ▶몽정을 시작하면 가족간의 지나친 노출은 삼가도록 한다 ▶몽정의 시작은 어른이 되는 시작 단계이므로 생리현상을 이해함과 동시에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통합되어 있고 성 기능 역시 정신적 자세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이해시킨다 ▶이 시기에 성 충동에 대한 이해와 조절, 해소능력, 자기 관리 능력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소아과 과장 **이종승**



원이나 치료소에 장기 거주하는 의료인 및 고용인, ④ 6개월에서 18세 사이의 가와사기병 등으로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⑤ 고위험자의 가족 등입니다.

예방 접종 지속시간이 짧아서 접종 다음 해에는 면역력이 감소하고 또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매년 백신 성분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매년 예방 접종해야 합니다.

독감 유행은 대개 12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접종 시기는 매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이지만 유행 시기에 6~23개월의 소아에게는 기본 접종으로 추천되고 임신 14주 이상의 임신부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접종 후 고열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부작용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접종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의 만성 질환자(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만성 폐질환,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신부전, 혈액소 병증 및 면역 기능 저하 환자), ③ 요양

독감 예방 접종 ②

심한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합병증을 의심해야하며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으로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것보다는 2차적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 심근염, 근육염과 어린 아이들에게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쓸때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라이(Reye)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독감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매년 예방 접종을 받는 것으로 유행시에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특

히 고위험군에게 비용-효과 면에서 우수하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방접종은 발병을 완벽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임상 증상 및 경과의 완화, 병원 방문횟수와 입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접종 대상은 감염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 집단 및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① 65세 이상의 노인, ② 6개월 이상의 만성 질환자(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만성 폐질환,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신부전, 혈액소 병증 및 면역 기능 저하 환자), ③ 요양

☞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국내거래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재화나 용역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원가절감과 자금부담 해소를 통해 대외무역 촉진효과를 위한 영세율제도 도입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내 내수 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법인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Q** 국내에서 생산된 생밤을 구입하여 깎질과 보늬(숙깎질)를 벗긴 간밤을 생산하여 수출할 계획으로 법인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한 생밤의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A**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축·수·임산물 등 생활필수품에 대하여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과세물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 면세사업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 중복과세 될 과 동시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면세누적효과를 완화하고 면세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면세매입세액 상당액만큼의 소비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에게 까지 유지시키고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은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

#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대표 李文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칩·썩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